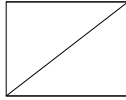


재허가신청서 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신청서

원 본

※ 사본은 “원본”을 “사본”이라고 변경 기재

2021. 6.

※ 이 페이지를 겹표지 및 속지 1쪽으로 하고 쪽번호 숨기기. 단면 인쇄.
년월은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 즉 최초제출은 “2021.6.”이 되겠지만 보완본이나
최종본은 “2021.9” 혹은 “2021.12.”가 될 수도 있음

로고 법 인 명

원본임이 틀림없음

※ 사본의 경우 “원본과 동일함”이라고 변경 기재

※ 쪽번호 숨기기. 단면 인쇄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 사본의 경우에도 원본 날인할 것

목 차

I. 재허가 신청서	1
II. 서약서	0
III. 일반현황	0
IV. 지상파DMB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0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0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	0
3.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0
4.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0
5.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0
V. 방송국 허가증 사본	0
VI. 주간기본편성표	0

※ 보다 자세한 하위목록 표시해도 무방

※ 쪽번호 숨기기. 단면 인쇄

I. 재허가 신청서

※ 이 페이지부터 “-1-” 로 쪽번호 표시. 색지로 단면 인쇄

서약서

본 법인은 재허가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하여 재확인하고 서약합니다.

II. 서약서

1. 본 법인은 방송법과 전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소유제한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 본 법인은 재허가 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본 법인은 재허가 신청서류에 기술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운영계획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 등이 국민과 정부와의 공적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본 법인은 재허가를 받을 경우, 재허가 유효기간 동안 방송법과 전파법을 준수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6월 일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 서약서는 첨부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 날씨는 최초신청일(공문날짜)로 기재

Ⅲ. 일반현황

1 개요

□ 휴먼명조 13포인트 진하게

○ 방송사(방송국)의 설립목적, 운영방향, 방송현황 등을 기술

- 휴먼명조 13포인트

· 휴먼명조 13포인트

※ 중고딕 12포인트

※ 내용 작성은 위 글씨체, 크기와 글머리 기호를 기본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필요시
중간제목 가,나,다 혹은 번호 등을 설정하여 사용 가능

2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

※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연혁

※ 방송국 개국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연혁을 기술

4

조직도

※ 해당 법인의 조직도를 첨부하되, DMB 전담부서가 아닌 일반부서에서 DMB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음영 표기하고, 관련 부서가 DMB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를 조직도 아래에 표 또는 당구장 표시로 기술

5

법인 현황

구분		세부 내역			
방송법인 명칭	국문				(약칭)
	영문				(약칭)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법인설립일자		자본금(단위:억원)			
구분	회사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약력	임기
법인대표자					... ~ ...
편성책임자					-
임원					... ~ ...
					... ~ ...
					... ~ ...
					... ~ ...
					... ~ ...
주주 현황		주주명	대표이사	참여지분(%)	회사자본금

※ 표에 맞게 해당내용을 작성하되, 주주현황은 5%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를 중심으로 기재, 그 외 주주는 기타로 합산하여 기재

※ 임원란에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회사 내부의 집행임원(경영진, 임원급)을 기재

6

이사회 구성 현황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 약력	임기	비고

※ 구분에는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등을 구분하여 기재
 ※ 비고에는 사외이사, 주주여부(주주일 경우 보유 지분 표시), 연임여부 등 특이사항 기재

**I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7

재허가 대상 사업자의 방송보조국 현황

연번	방송보조국 명칭	허가 번호	허가 일자	허가 만료일	소재지	방송사항	방송구역		주파수	출력
							일원	일부		
1										
2										
3										
4										

※ 지상파DMB 방송보조국 현황을 기재

1.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이행실적 현황(2018. 1. 1 ~ 2021. 5. 31)

가. 개요

<p>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p>

'18년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나. 2018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공적책임 등 관련 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계획

※ 2018년 재허가 당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책임·공정성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

※ 2018년 재허가 당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책임·공정성 관련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추진년도 포함)을 구체적으로 기술

- ※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심사는 제도적 장치 위주로 심사
 - 프로그램 품질제고 노력(심의제재 건수 감축 등)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노력
 - 선거관련 방송 공정성·객관성 확보 노력
 - 편성 규약 제정·공표 실적 등

□ 기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실적

※ 위 작성사항을 제외한,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 관련한 방송의 공적책임 등 제고실적 작성

※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책임), 제54조(업무)에 따른 이행실적을 작성

2. 편성규약 제정 및 공표 현황(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방송사업자)

□ 편성규약 제정일자

□ 편성규약 주요 내용

□ 편성규약 공표 방법 및 공표 현황

□ 편성규약 내용에 따른 주요 이행사항

- 편성위원회 구성 현황
- 편성위원회 개최 실적
- 기타 편성규약 내용 주요 이행실적

※ 편성규약 전문 : 별도 첨부(첨부서류 p.00 참조)

3. 자체심의제도 운영 현황

□ 자체심의기구 및 운영 현황(조직, 인력, 자체심의절차 및 방법 등 포함)

※ 자체심의 조직, 인원, 심의절차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자체심의현황(2018. 1. 1. ~ 2021. 5. 31.)

전체 방송 프로그램 편수	심의현황			심의 미필 건수	심의시기			심의결과	
	대본심의 건수 (비율)	제작물 심의건수 (비율)	전체심의 건수		사전심의 건수 (비율)	당일심의 건수 (비율)	사후심의 건수 (비율)	지적 건수	이행 건수

※ 자체심의 실적(2018. 1. 1. ~ 2021. 5. 31.) : 별도 첨부(첨부서류 p.00 참조)

- 심의실적, 지적사항 및 시정내용 등 작성

※ 자체심의 규정 : 별도 첨부(첨부서류 p.00 참조)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실현 계획('22~'26)

□ 기본방향

※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관련 실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자체심의기구 운영 계획을 포함할 것)

※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책임), 제54조(업무)에 따른 이행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실현계획은 2022. 1. 1. ~ 2026. 12. 31.

□ 주요 추진계획

1. 시청자 권익보호 등 이행실적 현황(2018.1.1 ~ 2021.5.31)

가. 개요

'18년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나. 2018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계획 및 이행실적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계획

※ 2018년 재허가 당시 제출한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계획(시청자 참여보장 방안, 시청자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

※ 2018년 재허가 당시 제출한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계획(시청자 참여보장 방안, 시청자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따른 이행실적(추진년도 포함)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타 시청자 권익보호 제고 실적

※ 위 작성사항을 제외한, 시청자 불만처리 시스템 개선실적 등 기타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실적을 작성

2. 시청자 민원 처리 현황

가. 시청자 민원처리 전담 부서 현황

나. 시청자 불만 접수창구 및 접수창구 안내 내역

다. 시청자 민원(불만)처리 절차

※ 시청자 불만처리 주체(담당부서 등), 처리절차, 피드백 및 업무 반영 절차 등 상세하게 기술

라.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

(단위 : 건)

구분	불만접수건수	불만처리건수	미처리건수	불만처리비율(%)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5월				
합계				

※ DMB방송국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여 작성

마. 시청자 불만 상세 내역

(단위 : 건)

구분	프로그램 불만	프로그램 관련 시정요구	시청자 권익보호	서비스 이용	기타	합계
2018년	건수					
	비율(%)					100%
2019년	건수					
	비율(%)					100%
2020년	건수					
	비율(%)					100%
2021년 1~5월	건수					
	비율(%)					100%
합계	건수					
	비율(%)					100%

※ '시청자불만처리 유형 분류(안)'을 참고하여 시청자불만 건수 및 비율 기재

바. 시청자 불만 미처리건수 상세 내역

(단위 : 건)

구분	프로그램 불만	프로그램 관련 시정요구	시청자 권익보호	서비스 이용	기타	합계
2018년	건수					
	비율(%)					100%
2019년	건수					
	비율(%)					100%
2020년	건수					
	비율(%)					100%
2021년 1~5월	건수					
	비율(%)					100%
합계	건수					
	비율(%)					100%

※ '시청자불만처리 유형 분류(안)'을 참고하여 시청자불만 건수 및 비율 기재

참고 시청자불만처리 유형 분류

□ 지상파·지역민방·종합편성·지상파DMB 사업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프로그램 불만	내용 불만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불만
	진행자 불만	진행자의 언행에 대한 불만
	출연자 불만	출연자에 대한 출연 불만 또는 출연자 발언 등에 대한 불만
	자료화면 불만	자료화면의 선정성 폭력성 및 다른 자료화면 사용에 대한 불만
	자막 불만	자막 오기 자막 표현에 대한 불만
	편성불만	프로그램 편성 관련 불만
프로그램 관련 시정 요구	영상 및 기사 삭제 요청	영상 및 기사 불만
	정정보도 요청	리포트나 제작 프로그램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민원인의 정정 및 삭제 요청 사항
시청자 권익보호	피해보상에 관한 건	보도 또는 프로그램 방영에 따른 피해보상 사항
	저작권에 관한 건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분쟁 등
	명예훼손에 관한 건	보도 또는 프로그램 방영에 따른 명예훼손 사항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 등 이용 불만	다시보기 불만, 이용 장애, 프로그램 소개 업데이트, 시청자 게시판 등
	기술관련 불만	방송 기술 및 난시청(종합편성 제외)
기타	기타	화질불만 등

※ 중·소분류 : 유형의 예시

4 시청자 참여 현황

1.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2018.1.1 ~ 2021.5.31)

가. 시청자위원회 운영 기본 방향

나.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	합계
시청자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건수					
제시의견 활용실적 건수					

※ 의견제시 및 활용 건수의 경우 당사의 시청자위원회 전체 건수를 표기하고, 괄호()로 DMB 관련 건수 추가 기재(ex.: 252(3))

다. 시청자위원회 제시 의견 반영 내역(2018.1.1 ~ 2021.5.31)

순번	제안시기	제안내용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반영 내역	활용시기

※ DMB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여 작성

라.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중 미반영 내역(2018.1.1. ~2021.5.31)

순번	제안시기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내역	미반영 사유

※ DMB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여 작성

마. 시청자위원회 위원 명단

□ 2018년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추천부문	추천단체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2019년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추천부문	추천단체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2020년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추천부문	추천단체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2021년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추천부문	추천단체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해당연도의 연말 기준으로 작성('21년은 5월 기준)

2.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현황

3. 시청자 평가원 운영 현황

4.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현황

5. 시청자 의견청취 고지 계획(실적)

○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청자 의견 공개 청취를 위한 안내 및 고지 이행 현황

※ 최초 신청 시 고지 계획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향후 의견청취(8월중) 기간이 끝나고 보정요청사항 반영한 재허가 신청서류 제출시(9월경), 고지 실적으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

6. 시청자 의견수렴 관련 홈페이지 등 운영 현황

※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알 수 있는 이미지파일 적극 활용하여 설명

□ 의견수렴을 위한 요약문 제출

- 의견수렴을 위해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문(운영실적 및 사업 계획)을 30페이지 내외로 작성후 제출
- 제출기한 : 재허가신청서 제출시
- 일반 시청자에게 공개되는 자료이니 경영상 공개 어려운 항목 삭제하고 공개되어도 무방한 자료로 만들 것

5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실현 계획('22~'26)

1. 기본방향

※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 방안 및 계획을 기술하되, 아래 사항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등 시청자 참여 제도 활성화 및 개선방안
- 시청자불만처리시스템 개선방안 등

2. 세부 추진계획

6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18~’21.5)

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현황(2018.1.1 ~ 2021.5.31)

가. 개요

'18년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나. 2018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 및 이행실적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

기타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2. 캠페인·행사·기부 등 주요 실적 현황

가. 개요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			합 계	
	건수	금액	전년비증감비율**	건수	금액	전년비증감비율	건수	금액	전년비증감비율	건수	금액	전년비증감비율	건수	금액
방송사명	기 부													
	행 사													
	캠페인													
	후 원													
	기 타													
총계														

* 회사에서 지출한 지원금을 기재. ** 금액 기준으로 증감비율 기재, '21년은 전년동기 대비 비율 기재

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순번	년월	지역	유형	사업명	주최·주관단체	지원 및 참여내용	지원금	비고
합 계								

※ 2018.1.1. ~ 2021.5.31. 기간 내용 작성

※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00.00.00 외 0건(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등)을 년월란에 기재. 지역은 시·도(서울특별시 제외) 단위로 구분하여 기재. 유형은 기부, 행사, 캠페인, 후원, 협찬,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지원금은 방송사에서 지불한 금액을 기재. 단,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 최신일자를 기준으로 리스트 작성. 양이 많을 경우 10쪽 분량만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별첨 할 것(별첨 자료에는 과거 자료부터 리스트 작성)

※ 관련 입증서류 : 별도 첨부(첨부서류 p.00 참조)

7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방안 및 실현계획('22~'26)

1. 기본방향

- ※ 다음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관련 계획
 -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관련 계획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계획 등등

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3. 세부 추진계획

1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이행실적('18~'21.5)

1. 방송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이행실적 현황(2018.1.1 ~ 2021.5.31)

가. 개요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

※ 방송시간, 편성비율, 방송실적 등은 월간방송실시결과 작성기준과 동일하게 작성

'18년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 2018년 재허가 신청시 제출한 편성의 기본방향 등 편성계획 내용과 구체적 편성내용 (이행결과)을 기재

라.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실적

(단위 : %, 백만원)

채널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본사(또는 제휴사) Relay 프로그램								
자체제작	재편집								
	신규								
외주제작	순수 외주								
	자회사 외주								
외부구입 프로그램	국내								
	국외								
	기타 프로그램								
	연간 총 전체방송	100%		100%		100%		100%	
※ 자체제작비 산정 기준 :									

※ 비율과 비용은 연간기준이며, 채널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이 있는 지역방송국(본사 프로그램 및 제휴사의 프로그램을 Relay하는 지역방송국)은 본사 또는 제휴사 Relay 프로그램과 타 항목의 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

※ 자체제작 실적을 어떤 기준으로 작성했는지 그 기준을 표 제일 하단 란에 기술할 것 ('14년 배포한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기준” 상의 직접제작비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재산상황공표집 자료 제출시 사용하는 방송프로그램제작비에서 외주제작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한 것인지 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22~'26)

1. 기본방향

※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허가받은 방송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상세하게 기술

2. 세부 추진계획

※ 채널별로 방송분야별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계획, 투자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방송프로그램 편성 계획

가. 자체편성 방송시간

채널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체 방송시간(분)					
	자체편성 프로그램 방송시간(분)					
	자체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직접사용채널의 연도별 자체편성 프로그램 방송시간과 편성비율을 작성

나. 자체제작 방송시간

채널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체 방송시간(분)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송시간(분)(비율)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 자체제작 시간이 자체편성 시간보다 클 수는 없음(자체편성은 자체제작+외부구입)

※ “라.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계획” 표의 ‘자체제작’ 비율과 일치해야 함

다. 분야별 방송비율

채널명	분야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보도	시간(분)				
	비율(%)					
	교양	시간(분)				
	비율(%)					
	오락	시간(분)				
	비율(%)					
전체 방송	시간(분)					
	비율(%)					

※ 직접사용채널의 연도별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 편성시간과 편성비율을 작성

라.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계획

(단위 : %, 백만원)

채널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본사(또는 제휴사) Relay 프로그램											
	자체 제작	재편집										
		신규										
	외주 제작	순수 외주										
		자회사 외주										
	외부구입 프로그램	국내										
		국외										
	기타 프로그램											
연간 총 전체방송		100%		100%		100%		100%		100%		

※ 비율과 비용은 연간기준이며, 연간 총 전체방송의 비용은 설명회자료 ‘3.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2-4. 분야별 투자계획’ 중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금액과 일치해야 함

※ 자체제작 비용 란에는 방통위가 '14.3월 제시한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기준”상의 직접제작비’를 기준으로 기입할 것. 다만 외주제작비는 별도 항목이 있으므로 외주제작비를 제외한 직접제작비를 기입함

* 직접제작비 : 원고출연료, 음향영상재료비, 미술재료비, 제작진행비 등 자체·공동·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기획·제작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임직원 인건비,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등 프로그램 기획·제작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상 간접제작비)은 제외

□ 개요

○ (지역 제작비 투자비율) 방송사업자 전체 매출액* 중 프로그램 직접제작비에 대한 비율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자료 기준

○ (프로그램 제작비) 방송사업자가 기획·편성하고 자체·공동·외주형태로 제작하여 방송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직접제작비와 간접제작비로 구분

- 단, 방송사가 기획·제작하지 않은 타 방송사 등이 제작한 프로그램 구입비, 기타비용*, 판매관리비* 등은 제외

* 기타비용 :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아닌 행사 수익을 위해 소요된 비용 등

* 판매관리비 :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 없는 임직원 및 외부인력의 인건비 등

※ 방송통신위원회 등 외부기관으로 부터 지원받은 제작 지원금을 포함

○ (직접제작비) 원고출연료, 음향영상재료비, 미술재료비, 제작진행비 등 자체·공동·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기획·제작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간접제작비) 임직원 인건비,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등 프로그램 기획·제작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프로그램 제작비 세부분류기준

가. 직접제작비

① 원고출연료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출연료(전속금 포함), 문예비(작가료) 등 비용

② 음향영상재료비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방송 저장 매체(CD, tape 등) 및 음반CD 구입비, 효과료 등 비용

③ 미술재료비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장비, 소품비, 무대·장비 설치운반비, 프로그램CG 등 비용

※ 미술재료비의 소품비를 소모품비 또는 지급수수료에 포함 가능

④ 외부장비이용료 : 외부에서 프로그램 제작장비(음향, 조명, 카메라, 특수효과 등)를 임차하는 비용

※ 외부장비이용료를 임차료에 포함 가능

⑤ 외부시설이용료 : 외부에서 프로그램 제작시설(장소, 차량 등)을 임차하는 비용

※ 프로그램 제작차량 : 취재차량, 중계차량, 특수차량, 제작장비 운반차량

※ 외부시설이용료를 임차료에 포함 가능

⑥ 시상비 : 경쟁을 통한 상품 및 상금 등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에서 집행되는 비용

⑦ 통신전재료 : 뉴스 제작을 위한 기본소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⑧ 중계권료 : 스포츠 등의 실황을 중계할 때 주최자측에 지불하는 비용

⑨ **저작권료** : 저작권 관련 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등)에 지불하는 비용

⑩ **외부제작인력 인건비**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된 외부인력의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단, 임직원의 인건비는 제외)

※ 인건비를 제작 진행비 또는 지급수수료에 포함 가능

⑪ **외부제작인력 복리후생비**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된 외부인력의 식비 등 복리후생비(단, 임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제외)

※ 복리후생비를 제작진행비 또는 지급수수료에 포함 가능

⑫ **외부제작인력 법정부담금**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된 외부인력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정부담금(단, 임직원의 법정부담금은 제외)

※ 법정부담금을 제작진행비 또는 지급수수료에 포함 가능

⑬ **기획비** :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사전 자료조사, 회의 및 도서구입비 등에 따른 비용(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없는 기획비는 제외)

※ 기획비를 도서인쇄비, 조사연구비 또는 회의비에 포함 가능

⑭ **여비** :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국내외 출장비(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없는 여비는 제외)

⑮ **도서인쇄비** : 퀴즈프로그램 문제출제용 도서구입비 등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된 도서인쇄비(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없는 도서인쇄비는 제외)

※ 도서인쇄비를 기획비 또는 조사연구비에 포함 가능

⑯ **조사연구비** :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사전 자료조사에 투입되는 용역비 또는 물품비 등에 따른 비용(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없는 조사연구비는 제외)

※ 조사연구비를 기획비 또는 도서인쇄비에 포함 가능

⑰ **회의비**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된 회의비용(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없는 회의비는 제외)

※ 회의비를 기획비 또는 조사연구비에 포함 가능

⑱ **제작진행비** : 뉴스제작 관련 취재 진행성 취재비, 프로그램 제작 관련 진행성 경비로서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투입되는 외부인력 용역비 등(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 없는 제작진행비는 제외)

※ 제작진행비의 진행비를 지급수수료에 포함 가능

⑲ **소모품비** : 미술재료비의 소품비 또는 드라마 등 방송제작과 연계되는 사무용 문구류와 소모성 잡품 비용(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 없는 소모품비는 제외)

⑳ **피복비** : 재난재해 현장 취재를 위한 취재, 촬영기사 방한복, 우의 및 헬멧 구입경비 등 비용(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 없는 피복비는 제외)

㉑ **수선유지비** : 프로그램 제작차량 및 방송장비 이용에 따른 수선유지비용(단, 프로그램 제작차량 및 방송장비의 감가상각비, 건물 및 송·중계소 시설 유지비용 등의 수선유지비는 제외)

※ 프로그램 제작차량 : 취재차량, 중계차량, 특수차량, 제작장비 운반차량

※ 방송장비 : 음향, 조명, 카메라, 특수효과 등

※ 제작차량의 수선유지비를 차량유지비 또는 보험료에 포함 가능

㉓ **차량유지비** : 프로그램 제작차량 이용에 따른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 유지비용(단, 프로그램 제작차량의 감가상각비 등의 차량 유지비는 제외)

- ※ 프로그램 제작차량 : 취재 차량, 중계차량, 특수차량, 제작장비 운반차량
- ※ 차량유지비를 보험료에 포함 가능

㉔ **수도광열비** : 프로그램 제작장소 및 방송장비 운영을 위한 전력료, 발전용유류 등에 따른 비용(단, 건물 및 송·중계소 시설 운영 등의 수도광열비는 제외)

- ※ 방송장비 : 음향, 조명, 카메라, 특수효과 등

㉕ **통신비** : 현장 중계방송, 보도기사 송고 등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이용하는 중계 단말기 사용료(위성, LTE 등) 등에 따른 비용(단, 자체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 완성품을 송신소, 중계소, 타방송사로 송출하는 비용 등의 통신비는 제외)

- ※ 통신비를 회선사용료에 포함 가능

㉖ **보험료** : 프로그램 제작차량, 운전자, 방송제작장비 등 보험료(단,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없는 차량, 송출장비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

- ※ 프로그램 제작차량 : 취재 차량, 중계차량, 특수차량, 제작장비 운반차량

㉗ **지급수수료** : 미술재료비의 소품비 및 진행비*(단, 프로그램 제작비 정산감사 수수료 등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 없는 지급수수료는 제외)

- * 프로그램 제작 관련 진행성 경비로서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투입되는 외부 인력 용역비 등

㉘ **임차료** : 프로그램 제작관련 외부장비이용료 및 외부시설이용료(단,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없는 임차료는 제외)

㉙ **회선사용료** :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필요한 회선사용료(단, 자체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 완성품을 송신소, 중계소, 타방송사로 송출하는 비용 등의 회선사용료는 제외)

- * 현장 중계방송, 실시간 현장상황 보도 및 보도기사 송고 등

㉚ **외주제작비** : 방송사가 기획·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비용(단, 외주제작에 소요되는 간접적 성격의 비용은 제외)

나. 간접제작비

① **임직원 인건비** : 임직원의 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 등 인건비

② **임직원 복리후생비** : 임직원의 복리 및 후생에 사용된 비용

③ **임직원 법정부담금** : 임직원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④ **감가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방송장비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된 부분

⑤ **무형자산(방송프로그램 외 무형자산)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된 부분

⑥ **세금과공과** : 법인세를 제외한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세금 및 각종 공과금

⑦ 직접제작비 항목* 중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

- * 기획비·여비·도서인쇄비·조사연구비·회의비·제작진행비·소모품비·피복비·수선유지비·차량유지비·수도광열비·통신비·보험료·지급수수료·임차료·기타(회선사용료)·외주제작비 등

⑧ 기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할당이 어려운 항목

□ 유의사항

- 직접제작비 항목 중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용되지 않는 기획비·여비·도서인쇄비·조사연구비·회의비·소모품비·피복비 등 간접적 성격의 비용은 반드시 간접제작비로 분류

3

DMB 전용 프로그램 (재)제작 및 확보계획 이행실적('18~'21.5)

1. 2018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DMB 전용 프로그램 계획 및 이행실적

가. DMB 전용 방송프로그램 (재)제작 및 확보 계획

연도	프로그램명	구분	분량(분)	제작(구매) 비용 (백만원)	편성시간(분)

※ 2018년 재허가 신청시 제출한 계획 기재

※ '구분' 칸에는 자체제작(신규개발), 자체제작(재편집), 외주제작, 외부구입 등으로 기재

나. DMB 전용 방송프로그램 (재)제작 및 확보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

연도	방송일시	프로그램명	구분	분량(분)	제작(구매) 비용 (백만원)	편성시간(분)

※ 2018년 재허가 신청시 제출한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 기재

※ '구분' 칸에는 자체제작(신규개발), 자체제작(재편집), 외주제작, 외부구입 등으로 기재

다. 기타 DMB 전용 방송프로그램 (재)제작 및 확보실적

※ 위 작성사항 외에 직접 사용채널의 DMB용 방송 프로그램 재제작 및 확보실적을 위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

※ DMB용 방송프로그램으로 본사(또는 제휴사) DTV '단순 수중계'를 제외한 편성 프로그램인 경우 포함하여 기재할 것

2. 2018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방송 DMB 전용 프로그램 투자 계획 및 이행실적

가. DMB 전용 방송프로그램 투자 계획

나. DMB 전용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제작비							
프로그램 구입비							
합 계							

- ※ 합계는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실적의 비용과 동일해야 함
- ※ 증감은 전년 실적대비 증감현황을 기재

4 DMB 전용 프로그램 (재)제작 및 확보계획('22~'26)

1. 기본방향

- ※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DMB 전용 프로그램 재제작 및 확보 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술

2. 세부 추진계획

연도	프로그램명	구분	분량(분)	제작(구매) 비용 (백만원)	편성시간(분)

- ※ 직접 사용채널의 DMB용 방송 프로그램 신규제작·구매·재편집 및 편성계획을 연도별로 작성
- ※ '구분' 칸에는 자체제작(신규개발), 자체제작(재편집), 외주제작, 외부구입 등으로 기재

3. DMB 전용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계획

가. DMB 전용 프로그램 투자 계획

나. DMB 전용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제작비										
프로그램 구입비										
합 계										

※ 합계는 위의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계획의 연간 총 비용과 동일해야 함

※ 증감은 전년 실적대비 증감현황을 기재

5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이행실적('18~'21.5)

1. 방송 편성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 등 주요 실적(2018. 1. 1 ~ 2021. 5. 31)

가.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기본 방향

※ 2018년 재허가 당시 제출한 계획에 맞게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주요 이행실적

※ 주요 이행실적(추진년도 포함)을 구체적으로 기술

※ 공익적 심사는 프로그램 편성위주로 심사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장애인방송,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자 방송, 비상업적 공익광고, 재난방송 편성실적 등 프로그램 편성위주로 심사

2.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2018. 1. 1 ~ 2021. 5. 31)

※ 직접사용채널에 한정하여 작성하고, 소계·합계가 맞도록 작성

가. 총괄표

(단위 : 분, %)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	비고
	방송시간 (분)	전년 대비 증감	방송시간 (분)	전년 대비 증감	방송시간 (분)	전년 대비 증감	방송시간 (분)	
채널명								
합계								

※ 전년대비증감은 전년대비 증감비율 기재

나.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현황

구분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채널명					
	채널별 방송시간 소계				
채널명					
	채널별 방송시간 소계				
방송시간 합계					

※ **편성실적 10페이지 이상인 경우, 최신일자 순으로 10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첨부서류로 제출**

- 최신 “일” 단위로 최근 자료부터 과거 자료 순으로 작성
- 단, 별첨 자료에는 발생 순서(과거 자료부터)로 전체 자료를 작성하며 본문에 작성한 내용도 별첨에 한번 더 작성하기 바람

※ 비고 칸에, 자체제작/계열사 교환/외부구매/수중계 등 구분하여 표기

6

편성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 등 실현계획('22~'26)

1. 기본방향

2. 주요 추진내역

※ 기본방향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 및 주요 프로그램 제작 계획 등 작성

3.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계획

가. 총괄표

(단위 : 분, %)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편성 시간 (분)	전년 대비 증감	편성 시간 (분)	전년 대비 증감	편성 시간 (분)	전년 대비 증감	편성 시간 (분)	전년 대비 증감	편성 시간 (분)	전년 대비 증감
채널명		%		%		%		%		%
합계										

※ 전년대비증감은 전년대비 증감비율 기재

o 공익적 프로그램 유형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시간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의 유형 등 작성 기준 등을 기재

1. 2018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채널 구성·운용 계획 및 이행실적(2018. 1. 1 ~ 2021. 5. 31)

가. 2018년도 채널 구성·운용 계획

※ 2018년 재허가 당시 제출한 채널 구성·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주요 이행실적

※ 2018년 재허가 당시 제출한 채널 구성·운용 계획에 따른 주요 이행실적(추진년도 포함)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채널 구성 관련 현황

가. 채널 구성 내역

나. 채널 임대조건

3. 채널 구성 향후계획(2022.1.1. ~ 2026.12.31.)

가. 기본방향

나. 세부 추진계획

※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채널 구성 계획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 임대채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임대조건과 채널 임대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제시

1 경영전략 및 관리실적 관련 이행 실적('18~'21.5)

1. 조직 및 인력 운영 현황

가. 직급별 인력구성 및 인건비 현황(2020.12.31.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임원	일반직					계약직					합계
						소계					소계	
인원	정원											
	현원			00	()							
인건비총액												
인건비평균												

※ 인원에서 DMB 인력을 ()로 기재

※ 각 사업자별 내부 직급체계에 맞게 구분하여 작성하되, 인건비는 근로소득원천영수증상의 연간급여총액(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음) 기준

※ 정원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말 것

나. 부문별 인력구성 현황(2021. 5.31. 기준)

(단위 : 명)

구분	임원	방송직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파견직	기타	합계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현원														

※ 임원, 방송직(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파견직, 기타 등으로 구분

※ DMB 인력을 ()로 기재

3. 경영 · 재정 · 기술적 능력

다. 내부 조직도(2021.5.31. 기준)

조직도

※ 사업자별 내부 조직도를 작성

2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및 이행실적(2018.1.1 ~ 2021.5.31)

가. 개요

'18년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나. 2018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조직운영 및 효율성 강화 계획 및 이행실적

□ 2018년도 조직운영 및 효율성 강화 계획

※ 2018년 재허가 당시 제출한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조직운영의 기본방침 및 효율성 강화방안, 인력운용 계획,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직운영의 기본 방침 및 효율성 강화방안

○ 인력운용 계획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 조직운영 및 효율성 강화 이행실적

※ 2018년 재허가 당시 제출한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에 따른 주요 이행실적(추진년도 포함)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직운영의 기본 방침 및 효율성 강화실적

○ 인력운용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실적

※ 인력 운영 실적

(단위 : 명)

방송국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	
	임원					
	방송직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파견직					
	기타					
	소 계					
합계						

※ 정규직+무기계약직 기준, DMB 인력은 괄호로 구분

3. 분야별 투자실적(2018.1.1 ~ 2021.5.31)

가. 직원 교육 관련

□ 직원 교육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18~'20년계		2021년 5월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전년 대비 증감 비율		전년 대비 증감 비율		전년 대비 증감 비율		전년 대비 증감 비율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국내전문교육	-	%		%		%				
국내교양교육	-									
해외교육	-									
기 타	-									
합 계	-									

※ 전년대비증감비율은 실적 기준으로 증감비율 기재

※ 2021년 5월의 계획은 당초 제출한 2021년도 계획 값의 5/12에 해당하는 값을 기재

□ 직원 교육실적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교육유형	교육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

※ 교육유형은 「국내전문교육,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타」, 방법은 「위탁, 강사초빙, 견학, 연수」 등으로 구분

나. 연구개발 투자 관련

□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		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전년 대비 증감 비율		전년 대비 증감 비율		전년 대비 증감 비율		전년 대비 증감 비율		전년 대비 증감 비율
연구개발 총투자	-	%		%		%		%		%

※ 전년대비증감비율은 실적 기준으로 증감비율 기재

※ 2021년 5월의 계획은 당초 제출한 2021년도 계획 값의 5/12에 해당하는 값을 기재

□ 연구개발 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연구분야	연구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합 계				(%)

※ 방법은 「자체연구, 공동연구」 등으로 구분하고, 공동연구의 경우는 괄호()안에 관련기관을 기재

4. 자금조달·운영계획 및 이행실적(2018.1.1 ~ 2021.5.31)

가. 개요

'18년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나. 2018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자금조달 및 운영 계획 및 이행실적

2018년도 자금조달 및 운영 계획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이행실적

※ 2018년 재허가시 제출한 계획에 각 연도별 실적을 기재

1. 중장기 경영전략**가. 중장기 경영전략 기본방향****나. 중장기 경영전략 세부 추진 계획****2. 조직운영의 기본 방침 및 효율성 강화 방안**

※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의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인력 및 조직운영 기본방침과 효율성 강화방안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3. 인력 운영계획

(단위 : 명)

방송국명	구분	2021년 5월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원							
	방송직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00 ()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파견직							
	기타							
	소 계							
	합계							

※ DMB 전담 또는 겸업인력을 ()로 기재

4.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채용계획(2022~2026)

(단위 : 명)

방송국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원						
	방송직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00 ()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기타						
	소 계						
	합계						

※ DMB 전담 또는 겸업인력을 ()로 기재

5. 분야별 투자계획

가. 기본방향

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제작비										
프로그램 구입비										
합 계										

6.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가. 기본방향

나. 세부 추진계획

7.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 계획

가. 기본방향

나. 세부 추진계획

8. 고화질 채널 도입 관련

가. 고화질 채널 도입 관련 의견

※ 고화질 채널 방송중인 경우 작성 불필요

나. 고화질 채널 도입에 따른 예상 소요 금액

3 재무구조 현황('18~'21.5)

1. 재무구조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0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요약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재무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 재무상태표 : 별도 첨부(첨부서류 p.00 참조) 및 엑셀파일 별도 제출

※ 손익계산서 : 별도 첨부(첨부서류 p.00 참조) 및 엑셀파일 별도 제출

※ 2018년, 2019년, 2020년 감사보고서 각 2부 : 별도 제출

※ 전년대비 증감비율은 실적칸에 두 번째 줄로 ()에 작성

※ '계획'은 2018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추정재무제표 기준, '실적'은 연도별 감사보고서 기준 작성

나. DMB 부문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0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 손익계산서 : 별도 첨부(첨부서류 p.00 참조) 및 엑셀파일 별도 제출

2. 수입현황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공적재원 (수신료, 기금 등)								
	재송신매출액								
광고 매출액	지상파광고 매출액								
	지상파DMB 광고매출액								
	방송채널사용 사업 광고매출액								
	협찬매출액								
	방송프로그램 제공·판매매출액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총 계								

※ 수입금액 실적의 총합은 재무구조 요약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금액과 동일해야 함

※ 수입현황 구분 기준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지침(재산상황공표집 자료) 기준으로 함

나. DMB 부문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공적재원 (수신료, 기금 등)			%			%							
재송신매출액			%			%							
광고매출액			%			%							
협찬매출액			%			%							
방송프로그램 제공·판매매출액			%			%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기타사업매출액			%			%							
총 계			%			%							

다. 기타방송사업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			%							
합 계			%			%							

※ 공적재원, 재송신, 광고, 협찬, 프로그램 제공·판매 매출액 등의 방송사업 매출액을 제외한 기타 방송사업매출 현황을 기재

※ 채널 임대수익, TPEG 서비스 수익 등 기타방송사업매출액 또는 기타사업매출액 (재산상황공표집 작성시 포함 기준과 통일) 중에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

라. 기타사업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채널 임대			%			%							
			%			%							
			%			%							
합 계			%			%							

※ 방송사업 매출액을 제외한 기타사업 매출액을 세부 내역별로 구분하여 기재

3. 주주 관련

가. 주주 현황(작성일 현재 기준)

① 구성 주주의 법인명 (성명)	대표 자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② 구성 주주간 특수 관계자 명	출자비중		동방송사 구성주주간 채무보증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③ 대기 업해 당 여부 (○, ×)	④ 외국인 지분 총합 비율 (%)
				주 식 수	지 분 율	피 보 증 사 명	보 증 일	보 증 액	법인 명 (성명)	대 표 자	국 적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총계				100%										

※ 모든 구성주주를 대상으로 작성함

나. 주주 변동내역(2018.1.1.~2021.5.31)

(단위 : 백만원)

회사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고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 5%이상 보유 주주의 변동 내역을 양식에 맞게 작성함

4 향후 재정 운영 계획('21~'26)

1. 추정재무제표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2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3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4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5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6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요약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재무비율	당기순손익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 엑셀파일 별도 제출

나. DMB부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2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3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4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5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6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 엑셀파일 별도 제출

2. 추정수입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공적재원 (수신료,기금 등)		%		%		%
재송신매출액		%		%		%
광고 매출액	지상파 광고매출액	%		%		%
	지상파DMB 광고매출액	%		%		%
	방송채널사용 사업광고매출액	%		%		%
	협찬매출액	%		%		%
방송프로그램 제공·판매매출액		%		%		%
기타방송사업매출액		%		%		%
기타사업매출액		%		%		%
총 계		%		%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공적재원 (수신료,기금 등)		%		%		%
재송신매출액		%		%		%
광고 매출액	지상파 광고매출액	%		%		%
	지상파DMB 광고매출액	%		%		%
	방송채널사용 사업광고매출액	%		%		%
	협찬매출액	%		%		%
방송프로그램 제공·판매매출액		%		%		%
기타방송사업매출액		%		%		%
기타사업매출액		%		%		%
총 계		%		%		%

나. DMB부문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공적자원 (수신료,기금 등)		%		%		%
재송신매출액		%		%		%
광고매출액		%		%		%
협찬매출액		%		%		%
방송프로그램 제공·판매매출액		%		%		%
기타방송사업매출액		%		%		%
기타사업매출액		%		%		%
총 계		%		%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공적자원 (수신료,기금 등)		%		%		%
재송신매출액		%		%		%
광고매출액		%		%		%
협찬매출액		%		%		%
방송프로그램 제공·판매매출액		%		%		%
기타방송사업매출액		%		%		%
기타사업매출액		%		%		%
총 계		%		%		%

3. 주주 관련

가. 주주 및 자본금 변동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변동 계획
주 주	
자본금	

※ 해당 사업자만 기재함

1. 2018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난시청 해소 계획 및 이행실적(2018. 1. 1 ~ 2021. 5. 31)

가. 난시청(음영지역) 해소 계획

※ 2018년 재허가 당시 제출한 연도별 난시청 해소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주요 이행실적

※ 2018년 재허가 당시 제출한 난시청 해소계획에 따른 주요 이행실적(추진년도 포함)을 구체적으로 기술

※ 방송구역 난시청 개선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 자료 등 적극 활용

2. 수신환경 조사계획(2022.1.1. ~ 2026.12.31.)

가. 기본방향

※ 방송구역의 수신환경 조사 주기,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 후,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수신환경 조사계획의 기본방향(주요계획)을 기술

나. 세부 추진계획

※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수신환경 조사계획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3. 난시청 해소 향후계획(2022.1.1. ~ 2026.12.31.)

가. 기본방향

※ 방송구역의 난시청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 후,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의 난시청 해소 기본방향(주요계획)을 기술

나. 세부 추진계획

※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의 난시청 해소 기본방향(주요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6

DMB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18~'21.5) 및 향후계획('22~'26)

1. DMB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2018. 1. 1 ~ 2021. 5. 31)

가. DMB 방송기술 등에 대한 투자실적

※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실적을 제외한 기술 등에 대한 투자실적을 기록하고 세부 내역을 2018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DMB 방송기술에 대한 구축·투자계획 기준으로 작성

나. DMB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		계 금액
		금액	전년 증감율	금액	전년 증감율	금액	전년 증감율	금액	전년 증감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지상파DMB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제작관련 시설		%		%		%		%	
	송신관련 시설		%		%		%		%	
	기타 시설		%		%		%		%	
	합계		%		%		%		%	

※ '계획'은 2018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DMB 방송시설에 대한 구축·투자계획 기준으로 작성

다. DMB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실적 중 주요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방송시설명	세부내용	투자금액	비고

※ DMB 방송시설 투자실적에 대한 세부내역을 빠짐없이 기재

라. DMB 부가서비스 운영실적

채널명	서비스 종류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도입시기	이용자 현황

※ 데이터방송 등 부가서비스 운영실적 기재

2. DMB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향후계획(2022.1.1. ~ 2026.12.31.)

가. 기본방향

- ※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의 방송기술 관련 투자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주요계획)을 기술
- ※ 장비교체, 화질개선, 수신감도 개선, 신기술 개발 등 방송기술 개선 관련 사항을 기재

나. 세부 추진계획

- ※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의 방송기술 관련 투자 기본방향(주요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DMB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지상파DMB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제작관련 시설		%		%		%
	송신관련 시설		%		%		%
	기타 시설		%		%		%
	합계		%		%		%

구분	연도	2025년		2026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지상파DMB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제작관련 시설		%		%	
	송신관련 시설		%		%	
	기타 시설		%		%	
	합계		%		%	

라.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중 주요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방송시설명	세부내용	투자금액	비고

마. DMB 부가서비스 운영계획

채널명	서비스 종류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도입시기	이용자 현황

※ 데이터방송 등 부가서비스 운영계획 기재

바. 지상파 DMB 방송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 등 유지보수 계획

추진시기	세부내용	소요비용	비고
'00.0월		00백만원	
'00.0월 ~ 0월		00백만원	
	합 계	총 00백만원	

1. 2018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실적(2018. 1. 1 ~ 2021. 5. 31)

가. 2018년도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4.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나.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이행실적

※ 재허가 당시 제출한 방송발전 지원계획 내용과 이행실적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다. 기타 재허가시 제출한 계획 외의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 실적,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실적, 방송프로그램 수출실적, 외국 공동제작 현황,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실적, 방송교류 협약 체결 등 상생 및 협력 실적 등을 포함하여 기술

2 향후 외주상생 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22~'26)

1. 기본방향

2. 세부 추진계획

- ※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 계획,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계획, 방송프로그램 수출 계획, 외국 공동제작 계획,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방송교류 협약 체결 등 상생 및 협력 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술

3 행정처분 현황('21.1~'21.8)

- ※ 2018년~2020년까지의 행정처분 현황은 방송평가 결과로 같음.
- 최초 제출시에는 2021년 5월까지의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2021년 8월까지 제출

1. 시정명령(불이행) 현황(2021. 1. 1 ~ 2021. 8. 31.)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비 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시정명령 불이행

-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시정명령(불이행), 처분·위반일자(yy.mm.dd), 위반 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 ※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후속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업무정지 등 처분명과 제반 내역을 기재할 것
- ※ 비고란에는 불복하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 등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2. 심의제재 현황(2021. 1. 1 ~ 2021. 8. 31.)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프로그램명	제재 조치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 고
		권고, 주의, 경고 등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0조제0항		

-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심의제재 현황을 양식대로 작성
- ※ 제재 조치명란에는 방심위로부터 받은 “권고”, 방통위로부터 받은 주의,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명 기재
- ※ 비고란에는 불복하여 재심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심”, “소송”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 ※ DTV방송국 심의제재 내역 일지라도 중 해당 방송 DMB 수중계한 경우 포함하여 작성할 것(방송국명에 “000DTV방송국” 내역으로 기재하여 작성 후, 비고 칸에 “수중계” 기재

3. 시정명령 및 심의제재 이외 기타 행정처분 현황(2021. 1. 1 ~ 2021. 8. 31.)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시정조치내용	비고
	과태료					

-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시정명령(불이행), 심의제재 이외 행정처분명(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위반일자(yy.mm.dd), 위반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 ※ 비고란에는 불복하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 등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4. 공정거래법 등 타법 위반 현황(2021. 1. 1 ~ 2021. 8. 31.)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 ※ 지상파방송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 및 소속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및 기타 법률 위반사례
- ※ (예시) 법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소속 임직원이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노동법, 저작권법 등 타법 위반 현황 기재
- ※ 비고란에는 불복하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 등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4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19~'21.5)

1. 2018년도 재허가 조건 및 부관사항 이행 현황(2019. 1. 1 ~ 2021. 5. 31.)

가. 총괄

순번	재허가 조건 및 부관사항	이행여부	미이행 사유	비고

- ※ 2018년도 재허가시 조건 및 부관사항의 이행여부, 미이행 사유 등을 요약하여 기재

나. 재허가 조건 이행 세부실적

순번	재허가 조건 및 부관사항	이행실적
		[2019년] 0 -
		[2020년] 0 -
		[2021년] 0 -

- ※ 2018년도 재허가시 조건 및 부관사항에 따른 연도별 이행실적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기재하고 세부 증빙자료 등은 표 뒤에 첨부(양이 많을 경우 첨부서류로 별첨)

다. 이행각서(이행약정서) 제출사업자 이행현황

순번	위원회 지적사항	이행각서 제출내용	이행 결과	미이행 사유	비고

※ 2018년도 재허가시 이행각서(이행약정서) 제출 사업자에 한하여 작성(제출사항 없을 경우 제목 옆에 “ : 해당사항 없음” 으로 표시)

5.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1 재난방송 운영 실적('18~'21.5) 및 향후 계획('22~'26)

1. 재난방송 편성 기본 방향

※ 재난방송 실시에 대한 방송사 내부 기본 방침 등 기술

2. 재난방송 운영실적(2018. 1. 1 ~ 2021. 5. 31.)

가. 재난방송 시스템 및 조직·인력 현황

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적

채널명	①통보건수	②실시건수	③미실시건수	실시율(%) (②/①*100)	비고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시 현황>

통보문 제목	통보시각	방송시작시간	특보 (속보 포함)	자막 (스크 롤포함)	spot (경 제인 등)	프로그 램 내반영	방송 형태	상세입력사항 (시스템내기타처리시)	비고
지진속 보	2016-07-05 20:34:56	2016-07-05 20:35	1				속보	뉴스속보 반영함	분이내
지진조 기경보	2016-07-05 20:35:14	2016-07-05 20:35		1			속보	뉴스속보 반영함	분이내
지진통 보	2016-07-05 20:37:31	2016-07-05 21:14	1				특보	9시뉴스 지진특보 반영	분이내

※ 실적내용이 5페이지 이상인 경우, 최신일자 순으로 5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

다 재난방송 실시 현황

(단위 : 분, %)

채널명	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	비고
		방송시간 (비율)	전년 대비 증감 비율	방송시간 (비율)	전년 대비 증감 비율	방송시간 (비율)	전년 대비 증감 비율	방송시간 (비율)	
	재난방송	(%)	%	(%)	%	(%)	%	(%)	
	전체방송시간	(100%)	%	(100%)	%	(100%)	%	(100%)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중 자막스크롤 방송 시간 등도 포함할 것

라 재난방송 프로그램 편성실적

구분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채널명					
	방송국별 방송시간 합계				
방송시간 합계					

※ 편성실적 5페이지 이상인 경우, 최신일자 순으로 5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

※ 일반적인 재난방지 활동에 대한 방송실적과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행한 재난 방송실적을 '비고'칸에 '일반 or 재난'으로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함

마. 재난방송 교육실적

- 총 건 (증빙자료 첨부)
- 세부 교육 실적 현황

바. 재난방송 모의훈련실적

- 총 건 (증빙자료 첨부)
- 세부 모의훈련 실적 현황

사. 재난방송 매뉴얼 관리 현황

- 매뉴얼 비치 현황 등 관리 현황

※ 재난방송 매뉴얼 : 별도 첨부(첨부서류 p.00 참조)

3. 재난방송 실시 계획(2022. 1. 1 ~ 2026. 12. 31.)

가. 기본 방향

※ 향후 5년간 DMB방송을 통한 재난방송 관련 방송사의 기본방향(주요계획)을 기술

나. 세부 추진계획

※ 기본 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을 기술

※ 재난방송 실시 계획,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 직원 교육 계획, 유관부처 및 관계 기관 협력 계획, 재난방송 개선계획,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완 계획 등

다. 재난방송 편성계획

채널명	분야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재난방송	시간(분)				
		비율(%)				
	전체 방송시간	시간(분)				
		비율(%)	100%			
	재난방송	시간(분)				
		비율(%)				
	전체 방송시간	시간(분)				
		비율(%)	100%			

※ 다만, 재난 방송은 미리 계획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예방적, 정기적 재난방지 활동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계획을 기재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18~'21.5)

1. 대표자 변경 현황

성명	재 직 기 간	주요약력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대표이사가 2인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2. 편성책임자 변경현황

성명	재 직 기 간	주요약력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2018년 1월부터 2021년 5월말까지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위원회 신고일자를 기재

3. 재허가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성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등록기준지	현주소	
성명 (대표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성명 (편성책임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 재허가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

※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별도 첨부(첨부서류 p.00 참조)

4. 편성책임자 공표 현황

편성책임자	공표방법	공표일시	횟수(회)	비고

3 특수관계자 및 다른 방송사업자 지분 소유 현황

1. 특수관계자 현황(2021.5.31)

방송사업자명	특수관계자명	허가·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국(TV채널)	유형	특수관계내용
재허가신청 법인명			지상파, PP	00% 출자 자회사
				00% 출자 모회사

※ 특수관계사의 범위는 방송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 다,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범위

※ 특수관계자가 방송국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방송국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송국 내역을 충실히 기재할 것

※ 특수관계내용에는 본인(재허가신청 방송사)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 출자했는지, 출자 받았는지에 따라 “00% 출자 자회사”, “00% 출자 모회사”로 구분해서 기재

2. 다른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현황(2021.5.31)

방송사업자명	지분 소유 방송사업자명	허가·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국(TV채널)	유형	출자금액 (단위:천원)	지분율 (%)
			지상파, PP		

※ 타 방송사업자 지분을 일부라도 보유하고 있거나 방송사업자간에 지분을 교차 소유하고 있는 현황을 모두 기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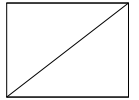
※ 방송사업자명란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 법인명을 기재. 따라서 교차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허가 신청법인명을 방송사업자명란에 기재하여 한줄 기재하고 바로 아래 줄에 본인이 상호출자받은 상대 방송사명을 기재하여 한줄 작성할 것

V. 방송국 허가증 사본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허가증 사본 첨부

※ 해당 문서를 스캔하여 그림파일(JPEG 등)로 변환하여 수록

재허가신청서 ②



VI. 주간기본편성표

- ※ 직접사용채널(라디오 채널 운용시 포함) 주간기본편성표 제출
- ※ 2021년 5월 31일 기준, A4 용지 규격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시설설치계획서

- ※ 이 페이지를 겹표지 및 속지 1쪽으로 하고 쪽번호 숨기기. 단면 인쇄.

원 본

- ※ 사본은 “원본”을 “사본”이라고 변경 기재

2021. 6.

- ※ 년월은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 즉 최초제출은 “2021.6.”이 되겠지만 보완본이나 최종본은 “2021.9” 혹은 “2021.12.”가 될 수도 있음

로고 법인명

목 차

I.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
II.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0
III. 시설설치계획서	0

※ 쪽번호 숨기기, 단면 인쇄

원본임이 틀림없음

- ※ 사본의 경우 “원본과 동일함”이라고 변경 기재
- ※ 쪽번호 숨기기, 단면 인쇄
- ※ 사본의 경우에도 원본 날인할 것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I.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 이 페이지부터 “- 1-” 로 쪽번호 표시. 색지로 단면 인쇄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지상파방송국 또는 지상파방송보조국 재허가)										
방송국명					최 초 허 가 일 자					
허가번호					전 파 형 식					
시설자명					송신주파수(MHz, kHz)					
설치 장소	송신소 (좌표)					안테나공급전력(kW, W) 주:		예비:		
	연주소 (좌표)					프 로 그 램 증 계				
방송구역에 관한사항	방송구역									
	추가구수	가구	시청취가구수		가구 (%)					
경영사항	경영형태			구분	성명	대표자	출자금액			
	자본금액	억원		주된 출자자						
	임원	직위	성명							
					다수 의결권자					
	최근 3년간의 사업수지내역 (세부내역별첨)	구분	년		년	년				
		수입	억원		억원	억원				
	지출	억원		억원	억원					
방송운영에 관한사항	방송사항 (부가서비스사항)									
	운용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기준 (주간편성표 별첨)	방송사항				1주간당 시간비율				
	타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방송시간	공급국명				1주간당 시간				
방송시설에 관한사항	구 분	송신장치	수신장치	송신안테나	수신안테나	안테나설치대				
	형식(구성)									
	제조사명									
	제조연월									
최근 3년간 시설변경에 관한사항	변경일	변경내용				참고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Ⅱ.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지상파방송국 또는 지상파방송보조국)							
① 송신부	(1)송신방식						
	(2)장치구분						
	(3)정격출력		(4)실효복사전력				
	희망 또는 발사 가능한 전파특성		(5)전파형식		(7)주파수범위		
			(6)주파수				
			(8)발진방식		(10)최고변조 주파수		
			(9)변조방식				
	(11)주파수변환 방식						
	(12)주파수편이억제장치						
	(13)안테나공급전력저하자장치						
중단부트랜지스터 (IC 또는 진공관)		(14)명칭		(15)개수		(16)비고	
스퓨리어스발사 제거장치		(17)방식		(18)제거대상 주파수		(19)삽입손실	
송신장치제원		(20)제조사명		(21)형식 또는 명칭		(22)일련번호 및 제조연월일	
②수신부 (주·예비 장치)	(1)전파형식 및 주파수범위		(2)국부발진주파수와 중간주파수		(3)중간주파증폭부통과대역폭 (-6dB점)		
	(4)수신채널 및 수신사이트명		(5)제조사명		(6)형식 또는 명칭		(7)일련번호 및 제조연월일
③ 송신 안테나 계 등	안테나	(1)형식 및 구성	(2)편파면	(3)이득(dB)	(4)지상고 (m)	(5)해발고 (m)	(6)주복사각도 또는 판넬방향
	급전선	(7)전기적 틸트				(8)방향별 틸트	
		(9)종별	(10)길이(m)	(11)손실(dB)	(12)기타	(13)비고	
		(14)전체손실(dB)					

210mm×297mm[백상지(80g/㎡)]

④ 수신 안테 나계	안테나	(1)형식과구성	(2)편파면	(3)이득 (dB)	(4)지상고 (m)	(5)해발고 (m)	(6)지향각
	급전선	(7)종별		(8)길이(m)	(9)손실(dB)		(10)기타
⑤ 연주 장치	(1)종류		(2)상용(대수)	(3)예비(대수)	(4)형식 또는 명칭		(5)비고
	(1)종류		(2)상용(대수)	(3)예비(대수)	(4)형식 또는 명칭		(5)비고
⑥ 조정 장치	(1)종류		(2)상용(대수)	(3)예비(대수)	(4)형식 또는 명칭		(5)비고
	(1)종류		(2)상용(대수)	(3)예비(대수)	(4)형식 또는 명칭		(5)비고
⑦ 전원 설비	구분	(1)종류	(2)용량	(3)전압	(4)상수	(5)비고	
	연주소	주 예비					
⑧ 접지 방식	(1)송신기		(2)접지저항				
	(3)안테나		(4)접지저항				
⑨ 안테 나설 치대 및 급전 선주	구분	(1)종류	(2)높이	(3)기부 지상고	(4)공용하는 방송국	(5)주수	
	안테나설치대						
⑩ 부속 설비	의사안테나	(1)종류	(2)용량	(3)개수			
	자동경보장치 또는 자동감시장치	(4)경보를 받거나 감시하는 장소					
⑪기타	자동제어장치 (원격제어장치포함)	(5)경보 또는 감시항목					
		(6)제어장소					
		(7)제어항목					
⑫첨부도면 및 자료							
(1)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표시도 (2) 부지내 시설 및 기기배치도							
(3)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4)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5) 안테나계 구성약도 (6) 송신안테나 지향특성도							
(7)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감시장치 계통도							
(8)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에 따른 방송구역 산출근거							

210mm×297mm[백상지(80g/㎡)]

기재요령	
1. 제①란 (1): 중파방송, 초단파방송 송신의 표준방식(모노포닉 또는 스테레오 포닉방송) 또는 TV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TV 음성다중방송) 등으로 기재합니다.	
2. 제①란 (2): 송신기가 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 "예비" "영상" 또는 "음성" 과 같이 기재합니다. 이 경우에 공사설계의 내용이 동일한 장치에 대하여 일괄하여 기재(제조번호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제①란 (3): 중파방송 및 단파방송의 경우에는 반송파전력을, 초단파방송의 경우에는 평균전력을, 디지털TV방송은 평균전력을 기재합니다.	
4. 제①란 (4): 초단파방송 및 TV방송의 경우에는 출력, 이득, 손실을 고려한 전력을 기재합니다.	
5. 제①란 (11): 방송파 직접 수신중계방식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6. 제①란 (12): 주파수편이 억제장치의 명칭을 기재하되 송신기와 동일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장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7. 제①란 (14), (15), (16), (20), (21), (22) 및 제②란 (4), (5), (6) : 허가신청서 제조자명 등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준공신고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8. 제②란 (4): 다른 방송국 또는 방송보조국의 전파를 직접 수신하여 중계하는 경우에는 수신채널 및 수신사이트명을 기재합니다.	
9. 제③란 (1) 내지 (7): 주장치와 예비장치를 구분 기재합니다.	
10. 제③란 (3): 상대이득 또는 절대이득을 기재합니다.(지향성안테나일 때에는 최대지향방향의 이득). 다만, 표준방송의 경우에는 단소수직안테나(Short Vertical Antenna)을 기준으로 한 이득을 기재합니다. ※ 단소수직안테나: 완전도체면상에 설치된 1/4파장보다도 매우 짧고 손실이 없는 접지 안테나	
11. 제③란 (4) 및 (5): 안테나 복사체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기재. 다만, 표준방송의 경우에는 (4)에 복사체의 길이를 기재합니다. 예) 지상고: 지상에서 안테나 중심부까지의 높이 해발고: 해면에서 안테나 중심까지의 높이	
12. 제③란 (6): 지향성안테나의 경우에는 지향성을 주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13. 제④란: 송신안테나계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14. 제⑤란: 레코드플레이어·테이프레코더·비디오레코더·스튜디오카메라·필름카메라·필름투사기 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15. 제⑥란: 제한중폭시·조정중폭기·전치중폭기·카메라제어장치·동기신호 발생장치·혼합중폭기·안정중폭기·스테레오 제네레이터 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16. 제⑦란 (5): 전원설비를 다른 방송국과 공용하는 경우 해당 방송국명과 공용 한다는 뜻을 기재합니다.	
17. 제⑧란: 라디얼스일 때에는 접지선수·길이 및 깊이를, 심굴점지일 때에는 면적·매수 및 깊이와 각각 접지저항을 기재합니다.	
18. 제⑨란: 안테나설치대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19. 제⑨란 (2): 구축물(건물)의 높이를 제외한 안테나 전체높이 값을 기재합니다.	
20. 제⑨란 (3): 기부지상고는 구축물(건물)이 높이를 포함한 높이를 기재합니다. 예) 건물+안테나	
21. 제⑩란 (4), (5), (6), (7)란: 경보·감시 또는 제어하는 장소가 경보감시 또는 제어대상 무선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22. 제⑩란: 각 호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속에 ○표를 합니다.	
23. 제⑩란 (1): 5분분의 1지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4. 제⑩란 (2): 국사·부속사·안테나 등의 개요를 기재하고, 안테나부근의 인접무선국 및 전파장애시설물을 표시합니다.	
25. 제⑩란 (3): 중계망의 구성과 방식을 기재합니다.	
26. 제⑩란 (4): 각단의 용도, 진공관(반도체)의 명칭주파수 및 전원전압 등을 기재합니다. 허가신청서 제조자명 등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준공신고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27. 제⑩란 (5) - 안테나설치대 안테나공용장치 및 급전선공용장치를 포함하고, 안테나복사체의 형상및 크기와 복수의 복사체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 복사체에 공급되는 전력비 및 전류의 위상을 함께 기재합니다. - 안테나의 취부상황을 평면도(방위표시) 및 측면도로 작성합니다.	
28. 제⑩란 (6): 수평면 및 수직면의 지향특성도를 각각 작성하고 1도 단위로 안테나 방사전력의 수직, 수평값을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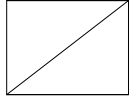
- **공사설계서 첨부자료** :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표시도, 부지내 시설 및 기기 배치도,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공중선계 구성약도, 송신공중선 지향특성도,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감시장치 계통도

Ⅲ. 시설설치계획서

- ※ 시설설치계획서의 경우 기존 허가·재허가시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사업자에 한해 작성
- ※ 추후 기술심사 과정에서 추가 보완자료 요구가 있을 수 있음

- **시설설치계획서** : 연주소 평면도, 연주소 설치장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임차의 경우) 등 시설설치계획서

재허가신청서 ③



첨부서류

※ 이 페이지를 겹표지 및 속지 1쪽으로 하고 쪽번호 숨기기. 단면 인쇄.

원 본

2021. 6.

※ 년월은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 즉 최초제출은 “2021.6.”이 되겠지만 보완본이나 최종본은 “2021.9” 혹은 “2021.12.”가 될 수도 있음

로고 법인명

목 차

원본임이 틀림없음

- ※ 사본의 경우 “원본과 동일함”이라고 변경 기재
- ※ 쪽번호 숨기기, 단면 인쇄
- ※ 사본의 경우에도 원본 날인할 것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1. 법인등기부 등본	1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0
3. 결격사유 확인서	0
4. 특수관계자 확인서	0
5. 편성규약 전문	0
6. 자체심의 실적	0
7. 자체심의 규정	0
8. 캠페인·행사·기부 등 실적	0
※ 실적 입증 서류	
9.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0
10. 재무상대표	0
11. 손익계산서	0
12. 재난방송 매뉴얼	0
※ 위의 목차에 포함된 자료는 반드시 포함하되, 그 외의 증빙자료를 포함한 전체 목차 순서는 위의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무방	
※ 쪽번호 숨기기, 단면 인쇄	

결격사유 확인서

본인은 방송법 제13조제3항의 결격사유인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방송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021. 6. .

성명

(서명)

특수관계자 확인서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이 확인서는 000주식회사의 2021년 12월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운용방송국에 대한 재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의 준수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인(법인)은 이 확인서의 내용에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 기재사항이 있어 방송법제8조(소유제한등)를 위반할 경우에

- ① 본인(법인)에 대해서는 소유제한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 ② 000주식회사의 운용방송국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허가기간의 6개월 단축,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법인)은 방송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이 확인서 작성일까지 000주식회사의 주식을 40%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본인(법인)과 ooo주식회사 주주(첨부1)와의 방송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자비중		본인(법인)과의 특수관계자 여부
			주식수 (주)	지분율 (%)	
본 법인명					본 법인
총 계					

본인(법인)과 ooo주식회사 주주(첨부1)와의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31일
까지의 채무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연월일(보증기간)	보증인	피보증인	보증내용	보증금액	비 고

2021년 월 일

주 주 명 :
대표자명 : (인)

첨부 : 1. 주주현황(2021.5.31 기준) 1부
2. 인감증명서 1부

< 참고 > : 특수관계자 관련 법령 (방송법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10.1.26., 2016.5.27.>

-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원
 -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동항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3.10., 2008.2.29., 2016.5.27.>

-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④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2008.2.29., 2013.3.23.>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삭제 <2016.5.27.>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2.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호에 따른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4.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단독으로 또는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개인
5.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그 대표자
6.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의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첨부1)

주주현황

(2021.5.31 기준)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자비중	
			주식수(주)	지분율(%)
총계				100%

(첨부2) 인감증명서 1부

별도 제출 자료

1. 2018년, 2019년, 2020년 감사보고서 2부
2.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 엑셀파일
3. 재무제표 관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엑셀파일